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안 제15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 또는”을 “한다),”로, “한다)인 경우에는”을 “한다) 또는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이하 “핀테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회사가 핀테크기업인 경우 :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 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3. ----- ----- ----- ----- ---- <u>한다</u>), ----- ----- ----- <u>한다</u>) 또는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이하 “핀테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

가. ~ 다.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자회사가 핀테크기업인</u> <u>경우 : 투자일임업자 및 투</u> <u>자자문업자</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824